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집 규정

[2025년 2월 18일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목 차

01.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1
02. 가맹단체 운영 규정	17
03. 가맹 및 탈퇴 규정	33
04. 관리단체 운영 규정	41
05. 지회 운영 규정	47
06.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55
07.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61
08.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69
09.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5
10.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81
11.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85
12.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91
13.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	95
14.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101

15. 대회개최 · 참가 보조금 지원 규정	113
16. 인사 규정	123
17. 복무 규정	149
18. 보수 규정	175
19. 회계 규정	199
20. 물품관리 규정	219
21. 여비 규정	239
22. 문서관리 규정	247
23.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57
24.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295
25. 차량운영 관리 규정	329
26. 실업팀 운영 규정	349
27. 기부금품 관리 규정	367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제정 2014. 01. 16.
개정 2014. 05. 08.
개정 2014. 12. 19.
개정 2015. 01. 19.
개정 2015. 09. 22.
개정 2016. 01. 18.
개정 2019. 08. 12.
개정 2020. 07. 20.
개정 2020. 11. 19.
개정 2021. 11. 19.
개정 2021. 12. 30.
개정 2022. 06. 30.
개정 2023. 01. 06.
개정 2025. 09. 29.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하고, 그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SeJong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약칭 SJS AD)라고 한다.<개정 2025. 09. 29.>

제2조(목적) 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시 경기단체와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시 장애인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읍·면·동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8. 12.>

제4조(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시 가맹단체와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관리·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4. 시·도 및 해외 도시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사업 전개
5.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7.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8.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향상과 통합체육수업 보급
9.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10.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1.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12. 전반적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방행정의 정책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기관에 건의 및 자문
13. 장애인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성 사업
14.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신설 2025. 9. 29.>
15. 장애인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신설 2025. 9. 29.>
16. 기타 장애인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5. 9. 29.>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장애인체육회는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와 유형별 체육단체를 가맹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 종목별 경기단체 및 시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부터 우선 시 지부로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가맹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개정 2021. 11. 19.>

② 가맹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 및 탈퇴)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가맹 및 탈퇴는 대의원 총회 의결로 확정한다.<개정 2023. 1. 6.>

② 장애인체육회는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탈퇴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대의원 총회<신설 2023. 1. 6.>

제8조(구성) ① 대의원 총회(이하“총회”라 한다)는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의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23. 1. 6.>

1. 가맹단체 장 각 1인
2. 선수위원회 위원장 1인
3. 이사회에서 추천한 체육계 및 학계인사 등 단, 대의원 총 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총 대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② 가맹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신설 2023. 1. 6.>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이 총회 5일 전에 장애인체육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총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신설 2023. 1. 6.>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장애인체육회의 해산 및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가맹단체의 가맹, 제명 및 강등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신설 2023. 1. 6.>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3. 1. 6.>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제19조제5항제5호의 규약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어나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23. 1. 6.>

④ 총회소집은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집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23. 1. 6.>

⑤ 총회는 통지된 안전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전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3. 1. 6.>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인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신설 2023. 1. 6.>

제11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신설 2023. 1. 6.>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 회장은 의장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대의원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신설 2023. 1. 6.>

③ 제1항에 따른 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23. 1. 6.>

제1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 1. 6.>

제1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3. 1. 6.>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장애인체육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3. 1. 6.>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신설 2023. 1. 6.>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 1. 6.>

④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신설 2023. 1. 6.>

제4장 임 원<개정 2023. 1. 6.>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장애인체육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인

3. 이 사 :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개정 2019. 8. 12.>
4. 감 사 : 2인
5. 고문 약간인,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 6.>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같다.

④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3. 1. 6.>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시장을, 부회장은 체육업무 부시장,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 7. 20., 2021. 12. 30., 2022. 6. 30. 2022. 12. 13., 2023. 1. 6.>

② 이사에는 장애인 선수 출신과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지부장을 각각 1인 이상을 선임 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며,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1. 6.>

④ 이사 정수에 1인 이상은 가맹단체의 대표 또는 유형별 체육단체장을 포함 할 수 있다.

⑤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개정 2020. 7. 20.>

⑦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⑧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인회계사 근무 경력자 중에서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6.>

⑨ 삭제 <2021. 11. 19.>

제18조(임원의 사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때<개정 2021. 11. 19.>
2.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개정 2021. 11. 19.>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할 때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개정 2023. 1. 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장애인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시하는 사항

3. 장애인체육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 1. 6.>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지를 갖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 11. 19.>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20. 11. 19.>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20. 11. 19.>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개정 2020. 11. 19.>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①, ②, ③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21조(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단체 및 읍·면·동 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하여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단체 및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회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지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개정 2019. 8. 12.>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지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이사회<개정 2023. 1. 6.>

제22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장애인체육회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개정 2023. 1. 6.>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 1. 6.>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6.>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6.>
7. 삭제 <2023. 1. 6.>
8. 규약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3. 1. 6.>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개정 2023. 1. 6.>

제27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3. 1. 6.>

③ 삭제 <2023. 1. 6.>

제27조의 2(상임이사회) 삭제 <2023. 1. 6.>

제28조(각종 위원회) ① 장애인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 11. 19.>

제6장 생활체육위원회<개정 2023. 1. 6.>

제29조(생활체육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체육회규약 제4조제3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0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이내를 두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 위원은 해당 체육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체육회 사업 관련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 11. 19.>

제31조(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해당 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7장 가맹단체<개정 2023. 1. 6.>

제32조(기관) 가맹단체에 이사회를 둔다.

- 제33조(임원선임 및 보고)** ① 가맹단체의 임원은 해당 단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도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 가맹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개정 2023. 1. 6.>

제35조(자산) 장애인체육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체육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 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 비
5.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 제36조(자산의 구분)** ① 장애인체육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 금

3.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장애인체육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7조(재산관리) 장애인체육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38조(잉여금의 처리) 장애인체육회의 매 회계연도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단, 시비보조금은 정산 보고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한다.)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적립시키기 위한 적립

제39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 6.>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업 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기금 및 적립금) ① 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1조(회계연도)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가맹단체의 회계감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9장 사무처 <개정 2023. 1. 6.>

제43조(사무처) ①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44조(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45조(사무처 직제와 규정)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6조(경영공시) 장애인체육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제10장 보 칙 <개정 2023. 1. 6.>

제47조(표창 및 징계) 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8조(규정개정) 장애인체육회의 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약 중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이전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 등 이사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개정) 「가맹단체 운영 규정」, 「가맹단체 가맹 및 탈퇴 규정」, 「읍·면·동지부 운영 규정」, 「관리단체 운영 규정」,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규정」, 「회계 규정」, 「문서관리 규정」, 「체육지도자 임면 규정」 중 “본회”를 “장애인체육회”로 일괄 개정한다.

부 칙 (2015.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제9조(임원의 임기)는 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와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가맹단체 운영규정, 가맹 및 탈퇴규정, 지회 운영규정,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신설 2023. 1. 6.>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 제16조제3항, 가맹 및 탈퇴규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제4조,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지회운영 규정 제6조제4호, 회계규정 제20조 중 “이사회”를“총회”로 한다.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조의 규약 제6장제27조를 규약 제7장34조로 한다.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의 규약 제21조, 제2조의 규약 제40조를 각각 규약 제28조, 제47조로 한다.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의 규약 제22조를 규약 제29조로 한다.

전문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의 규약 제21조를 규약 제28조로 한다.

학교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의 규약 제21조를 규약 제28조로 한다.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제1조의 규약 제38조를 각각 규약 제45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장애인체육회는 2023년 6월까지 대의원총회를 구성토록 한다.<신설 2023. 1. 6.>
② 총회가 구성되기 전,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 임원 선임은 회장에게 일임한다.<신설 2023. 1. 6.>
③ 장애인체육회는 대의원 총회 구성전까지 이사회가 대의원 총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사회가 행한 이전의 모든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 6.>

부 칙 (2025.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